

1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관련 Q&A	
연번	질의 및 답변
1	<p>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 시술(보조생식술)이란 무엇인가요?</p> <p>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의 수정을 보조하기 위한 일련의 의학적 시술로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내로 이식하는 체외수정(일명 시험관시술)과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시기에 맞추어 여성의 자궁 등으로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을 일컬어 난임치료 시술(보조생식술)이라고 합니다.</p>
2	<p>난임치료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?</p> <p>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체외수정 : 정자·난자채취 및 처리 → 수정 및 확인 → 배아 배양 및 관찰 → 배아 이식 (동결배아 이식의 경우 해동 과정도 급여) • 인공수정 : 정자채취 및 처리 → 자궁강내 정자주입술
3	<p>시술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나 이를 주사 맞는 비용도 비싸서 부담이 됐는데</p> <p>과배란 유도, 배란촉진, 조기배란 방지, 착상 보조 등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, 급여 약제 투여시에는 관련 주사료 등 행위료도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다만, 일부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(반복 유산·착상 실패 환자 등에게 적용되는 착상보조제 등)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</p> <p>참고로, 10.1일 이후에도 난임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</p>
4	<p>보조생식술과 관련된 각종 검사나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?</p> <p>보조생식술에 소용된 비용이 급여 적용되므로 해당 검사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로 전환됩니다. 다만, 개별 검사별 급여기준이 별도 존재하거나 비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</p> <p>초음파 검사는 보조생식술 시술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.</p>
5	<p>남은 배아를 냉동·보관하는 비용도 급여 적용이 되는 건가요?</p> <p>비급여에 해당됩니다.</p>
6	<p>태아나 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검사는 급여 적용이 되는 건가요?</p> <p>비급여에 해당됩니다.</p>

2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
연도	2016~2017.하반기	2017.상반기~2018.상반기	2018.상반기 이후
품목수	12항목	28항목	12항목
감염 예방	<p>< 1순위 > 1회용 수술포 등 감염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사용을 권장하는 치료재료(6항목)</p> <p>< 2순위 > 안전바늘주사기 등 의료인을 보호하여 감염 전파 등을 줄이기 위한 치료재료(6항목)</p>	<p>< 3순위 > 뼈 생검침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재사용보다 1회용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1회용 치료재료(8항목)</p>	-
환자 안전		<p>< 1순위 > 지혈제 등 수술시 출혈량 감소 등 인체 위해를 감소시키는 치료재료(10항목)</p> <p>< 2순위 > EDI 카테터 등 면역취약 계층을 위해 필요한 치료재료(4항목)</p> <p>< 3순위 > ETCO₂ 측정 필터라인 등 환자감시에 효과적인 치료재료(6항목)</p>	<p>< 4순위 > MVR blade 등 재사용시 기능 저하로 환자 안전을 위협 (5항목)</p> <p>< 5순위 >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시술 시간 단축 등 기능 개선 (7항목)</p>

- * 2, 3단계에 해당하는 치료재료(40항목)에 대해서는 추후 품목별 재검토, 건보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보상 여부 재결정 예정
- * 별도 보상 전환 검토 시 또는 급여 전환 후 사용 실태, 청구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급여기준 마련